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7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다. 상 정 일 자 : 1998. 9. 26(제70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건설과장 하정윤)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현행조례상 일부개선, 보완
 - 재해대책기금관리를 구금고에 관리
 - 기금용도를 세분화 구체화하며 회계관리를 세계현금예로 관리
 - 기금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조항신설
 - 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출납 폐쇄후 3월이내 작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 7월 내부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 총람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
-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제고, 회계관리 기능강화, 기금의 통제강화등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준용하였으며
- 또한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현행 우리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이상은 위원)

-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제6조①항 2호 기금출납원 건설행정 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 담당주사로 제7조⑤항 간사 1인 건설행정 업무담당 주사를 방재업무담당 주사로 수정하여야 하는 수정동의 발의

7. 심사결과 : 수정의결(재석:8명, 찬성:7명, 기권:1명)

붙임 : 수정안대비표 1부. 끝.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 3. -----	제2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이상 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예탁관리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건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6.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사하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사하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의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출현금의 예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건설행정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 ----- 1. ----- : ----- 2. ----- :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 ----- 1. ----- : ----- 2. ----- : 방재----- ②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건설과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개정안과 같음 ④개정안과 같음 ⑤----- -----방제----- -----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운용)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용) 개정안과 같음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부칙 개정안과 같음